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21

발의연월일: 2024. 7. 1.

발 의 자:이병진·송옥주·윤후덕

임호선 · 한정애 · 이상식

이재관 • 한민수 • 안규백

이연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로서 승차 정원이 6인 이하이면서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이거나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위 배기량 기준은 1992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점, 최근 자동차기술 발달로 배기량이 낮은 고가차량이 개발되는 등 배기량이 고급 승용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게 된 점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. 또한 장애인의 자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삭제하고, 특례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현행 2천

시시에서 3천시시로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 9조제4항제1호가목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"를 "면제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"2천시시"를 "3천시시"로 한다.

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(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세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)한다"를 "면제(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)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"2천시시"를 "3천시시"로 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.
- 제2조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제4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	제17조(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
감면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감면) ①
장애인(제29조제4항에 따른 국	
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, 이하	
이 조에서 "장애인"이라 한다)	
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	
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	
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	
세 또는 「지방세법」 제125조	
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(이하	
"자동차세"라 한다) 중 어느 하	
나의 세목(稅目)에 대하여 먼저	
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	
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	
<u>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</u>	<u>면제한다</u> .
<u>다</u> .	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	1
해당하는 승용자동차	
가. 배기량 <u>2천시시</u> 이하인	가 <u>3천시시</u>
승용자동차	
나.•다. (생 략)	나.•다. (현행과 같음)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
- ②·③ (생 략) 제29조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 면) ① ~ ③ (생 략) ④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
 - 가유공자(「보훈보상대상자 지 원에 관한 법률 |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 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 람을 포함한다)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 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람(이하 "국 가유공자등"이라 한다)이 보철 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(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(稅目)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9조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
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4

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(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경감)한다. 다만,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
가. 배기량 <u>2천시시</u> 이하인 승용자동차
나.・다. (생 략)

- 2. ~ 4. (생략)
- ⑤ (생략)

면제(「보
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
률」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
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
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
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
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
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취
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
0을 각각 경감)한다
1
가 <u>3천시시</u>
나. • 다. (현행과 같음)
2. ~ 4. (현행과 같음)
⑤ (현행과 같음)